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정치단체의 범위 명확화〉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710호)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정치단체의 범위 명확화〉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70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 목 차

|                         |   |
|-------------------------|---|
| I. 개 요 .....            | 1 |
| 【정부 제출안】 (국가공무원법) ..... | 1 |
| 【정부 제출안】 (지방공무원법) ..... | 2 |
| II. 검토의견 .....          | 3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 3 |
| 2. 검토의견 .....           | 6 |

## I. 개 요

### 【정부 제출안】(국가공무원법)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출연월일 : 2024. 7. 12.

다. 제출연월일 : 2024. 7. 15.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정부 제출안】(지방공무원법)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출연월일 : 2024. 7. 12.

다. 제출연월일 : 2024. 7. 15.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Ⅱ. 검토의견<sup>1)</sup>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이 금지되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등).

| 구분                         | 현행                                                            | 정 부 안                                                                                                                                                                                                                                                   |
|----------------------------|---------------------------------------------------------------|---------------------------------------------------------------------------------------------------------------------------------------------------------------------------------------------------------------------------------------------------------|
| 국<br>가<br>공<br>무<br>원<br>법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br>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br>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br>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br>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br>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

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조문 취지 및 개정 내용이 동일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 구분     | 현행                                                                                                                                                                           | 정부안                                                                                                                                                                                                                                       |
|--------|------------------------------------------------------------------------------------------------------------------------------------------------------------------------------|-------------------------------------------------------------------------------------------------------------------------------------------------------------------------------------------------------------------------------------------|
|        | <p>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4. (생략)</p> <p>5. 타인에게 <u>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u>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p> <p>③·④ (생략)</p> | <p><u>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u></p> <p>② -----<br/>-----<br/>-----<br/>-----.</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다른 사람</u>-- <u>정치단체</u>-----<br/>-----<br/>-----</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지방공무원법 | <p>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u>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u></p>                                                                                                      | <p>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u>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u></p> <p>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u>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u></p> <p>2. 「정당법」에 따른 <u>창당준비위원회</u></p> <p>3. 「정치자금법」에 따른 <u>후원회</u></p> <p>4. 「공직선거법」에 따른 <u>선</u></p> |

| 구분 | 현행                                                                                                                                                                                             | 정 부 안                                                                                                                                                                                                                                                                                                        |
|----|------------------------------------------------------------------------------------------------------------------------------------------------------------------------------------------------|--------------------------------------------------------------------------------------------------------------------------------------------------------------------------------------------------------------------------------------------------------------------------------------------------------------|
|    | <p>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u>특정정당</u>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4. (생략)</p> <p>5. 타인에게 <u>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u>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p> <p>③·④ (생략)</p> | <p><u>거운동기구</u></p> <p>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u>단체</u></p> <p>② ----- <u>특정 정당</u> -----</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다른 사람</u>-- <u>정치단체</u>----</p> <p>-----</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2. 검토의견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1항은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 관련 단체를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23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그 밖의 정치단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규범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sup>2)3)</sup>

- 2) [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2020.4.23.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확인]
-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므로, 위 조항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또한 위 조항은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97 참조).
-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정도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명확성이라 할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조항은 가입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정당’에 준하는 정치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어렵다.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준을 도출해낼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법적용기관인 법관의 보충적 법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개정안은 이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의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sup>4)</sup> 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sup>5)</sup> 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sup>6)</sup>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sup>7)</sup> 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3)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4)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5) 「정당법」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룬다.

6)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8.(생략)

7)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의 경우에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選舉事務所 1個所)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취임하는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포함),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명시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는 바,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관한 부분만을 심판 대상으로 하여 해당 부분에 한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동 위헌 결정이 교원 외의 공무원 일반을 구분하여 교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 일반에 적용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⑦ (생략)

첫째,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 제65조제1항<sup>8)</sup>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당 또는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려는 내용의 법률안<sup>9)</sup>이 다수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과 이들 법률안을 함께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음.<sup>10)11)</sup>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의 의의에 대해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 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 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헌법적 해석<sup>12)</sup>의 관점에서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

8)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1항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안, 의안번호 제220080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안, 의안번호 제2201595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신장식의원·전종덕의원안, 의안번호 제220188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신장식의원·전종덕의원안, 의안번호 제2201693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의원안, 의안번호 제2201862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의원안, 의안번호 제2201859호)

10) 동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3인(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은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 교원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11) 그 밖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안, 의안번호 2203774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안, 의안번호 2203778호)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

12) 헌법재판소 1997. 4. 24. 95헌바48

“위 조항의 뜻은 공무원이 정치과정에서 승리한 정당원에 의하여 충원되는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바로 그러한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헌법 제7조 제1항)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정치 활동의 허용 범위와  
한계<sup>13)</sup>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둘째, 개정안은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명칭을 각 호로 나열하고 그 밖에 정치단체에 포함시  
킬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예비적 규정을 별도의 호로 규정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구체화하는 입법  
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적·추상적 요건의 형태로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  
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정 정  
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나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가능성”, “정당에 준하는 단체로 한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제시하고 있음.<sup>14)15)</sup>

---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  
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헌법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  
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직업공무원제도가 국민주권원리  
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밝힌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도 같다)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  
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헌법의 위 조항을 법률로써  
구체화한 것이다.“

- 13) **헌법재판소 2020. 4. 23. 2018헌마551(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므로, 공무원은 공인의 지위와 사  
인의 지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와 기본권을 누리는 기본권주체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하여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도  
아니 되지만,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  
다 더욱 넓고 강한 기본권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 제6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 관련 단체의 범위를 적정한 범위에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법제적 측면에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 관련 단체를 구체화하는 입법의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65조제1항제2호의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는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안 제3호)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안 제4호)는 안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대표적 사례로 특별한 논란 없이 포섭될 수 있음.

---

14) 동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그 밖의 정치단체”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합헌 의견(3인)은 해당 조항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15) 위헌 의견(6인)에서도 해당 조항이 문언상 “정당”에 준하는 정치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준을 도출해 낼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 이를 반드시 단체의 명칭을 열거적 규율 방식에 따라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하여 “정당”에 준하는 단체로서의 기준을 제시하여 한정적으로 규율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반면, 개정안은 「정당법」 등 특정한 정치관계 법률을 인용하여 개별 정치단체의 고유한 명칭을 명시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바, 정당선거사무소가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sup>16)</sup>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설치되는 교육감선거에서의 선거운동기구가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치관계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법률에 근거한 새로운 유형의 정치 관련 단체가 신설되는 경우 동 단체가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의 가능성도 있음.

이렇게 볼 때,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명칭을 특정하여 나열하는 입법 방식이 오히려 법률의 규범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그 밖의 정치단체”를 구체화하는 입법의 방식과 관련하여 보다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

16) 법 적용에 있어 정당선거사무소를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는 바, 이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sup>17)</sup>

|              |
|--------------|
| 문 의 처        |
| 02)6788-5342 |

---

17) 동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그 밖의 정치단체”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합헌 의견(3인)은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서 자율적인 형성과 운영을 본질로 하는 정치조직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규율이 필요한 “정치단체”를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시하고 있음.